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

1. 「행정절차법」 제41조 에 따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2.11.9(수) 까지 우리처(축산물안전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습니다.
3. 아울러, 동 개정령(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전자관보('22.9.30.字) 및 우리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식약처 공고 제2022-434호) 1부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식약처 공고 제2022-435호) 1부  
3. 의견서(양식) 1부. 끝.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식품정책과장), 부산광역시(농축산유통과장), 대구광역시(농산유통과장), 인천광역시(농축산유통과장), 광주광역시(생명농업과장), 대전광역시(농생명정책과장), 울산광역시(농축산과장), 세종특별자치시(동물위생방역과장), 경기도지사(동물방역위생과장), 충청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충청남도지사(동물방역위생과장), 전라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전라남도지사(동물방역과장), 경상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 경상남도지사(동물방역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동물방역과장),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장(동물위생시험소장), 동물위생시험소장,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동물위생시험소장),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축산위생과장),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축산물검사과장),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동물위생시험소장),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동물위생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장(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장),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장,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충청북도동물위생시험소장, 충청남도동물위생시험소장, 전라북도지사(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장),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장, 경상북도동물위생시험소장, 경상남도동물위생시험소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동물검역과장),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한국수입육협회, 한국양육협회, (사)전국 식육부산물전문상회, (사)한국식자재유통협회, 소비자단체협의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협중앙회 축산유통본부, (사)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한국난가공협회, (사)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사)한국낙농육우협회장, (사)한국오리협회, (사)단법인 한국유가공협회, (사)한국육계협회, 한국육가공협회, 사단법인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사단법인 한국축산물처리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축산부산물업중앙회, 사단법인 축산기업중앙회,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전국한우협회, 대한양계협회장, 사단법인 낙농진흥회, 대한수의사회,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장, (사)한국식품안전협회, 축산물위생교육원장

주무관 **남경우** 사무관 **김충현** 축산물안전정책과장 **김철희** 전결 2022.9.30.

협조자

시행 축산물안전정책과-7021 (2022. 9. 30.)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축산물안전정책과 / [www.mfds.go.kr](http://www.mfds.go.kr)

전화번호 043-719-3247 팩스번호 043-719-3270 / [nkw98@korea.kr](mailto:nkw98@korea.kr) / 대한민국 공개